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[별지 제4호서식] <신설 2014.3.14>

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

신청법인 (합병법인)	① 법인명	② 사업자등록번호
	③ 대표자 성명	④ 개업일
	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(전화번호:)	
피합병법인	⑥ 법인명	⑦ 사업자등록번호
	⑧ 대표자 성명	⑨ 개업일
	⑩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(전화번호:)	
	⑪ 승계한 사업의 내용	

합병등기일	년 월 일	합병대가			
		⑫ 계(⑬+⑭+⑮)	⑬ 주식(출자지분) 가액	⑭ 합병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에 대한 합병신주 교부 간주액	⑮ 기타

세액공제 계산내용

기술가치 산정금액	⑯ 벤처기업특별법상 평가기관의 피합병법인 특허권등 평가금액(다만, 다음 금액을 한도로 함) Max(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양도가액-순자산시가, 0)	
	⑰ 지급대가 중 피합병법인 특허권 등의 해당 금액 (⑱-⑲)	
	⑱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	
	⑲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(⑳-㉑) × 130%	
	⑳ 피합병법인의 자산총액(특허권등 평가가액 제외)	
	㉑ 피합병법인의 부채총액	
	㉒ 기술가치산정금액(⑯, ⑰ 중 선택한 금액)	
㉓ 세액공제금액 (㉒×10%)		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1조의3제14항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작 성 방 법

⑯란에는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1조의3제3항제1호에 따라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2조의3제5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적습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]